#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9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이종배・이 용・박성민

김예지 · 성일종 · 태영호

추경호 • 유영석 • 엄태영

박대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

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 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6조의2(전·입학 편의 제공) 교
	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
	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
	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
	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u> 여야 한다.</u>